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026
----------	-------

발의연월일 : 2026. 7. 20.

발 의 자 : 윤준병 · 서삼석 · 주철현
안호영 · 전용기 · 송옥주
문금주 · 허성무 · 권칠승
이춘석 · 이학영 · 김성범
이정문 · 최혁진 · 이재관
김 윤 · 김의겸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행위 또는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및 관리청으로부터 비치베드, 파라솔 등의 피서용품 대여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구역 외 구역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의 자기 소유 피서용품의 정당한 설치나 이용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해수욕장의 무단 점용 또는 시설의 훼손 금지 외에 적법한 권원 없이 무단으로 금전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조례로 정한 사용료를 초과하여 과도한 요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이용객들의 불편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해수욕장 시설의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용료를 해수욕장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초과하여 금전을 받거나 요구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며, 누구든지 해수욕장시설의 이용 또는 피서용품의 설치·이용과 관련하여 법령·조례 또는 관리청의 위탁 등에 따른 정당한 권원 없이 금전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여가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및 제22조의2 신설 등).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 중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관리·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관리·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하는 경우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용료를 초과하여 금전을 받거나 요구한 경우
3. 제22조제1항제13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금전을 받거나 요구한 경우

제21조의 제목 중 “징수”를 “징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해수욕장시설의 관리·운영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용료를 해당 영업장소 등 해수욕장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해당 사용료를 초과하여 금전을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제1항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해수욕장시설의 이용, 피서용품의 설치·이용과 관련하여 법령
· 조례 또는 관리청의 위탁 등에 따른 정당한 권원 없이 금전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조사) ① 관리청은 제21조제3항 또는 제22조제1항제13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수욕장 안의 영업장소, 판매·대여시설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
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
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일시, 목적 및 대
상 등을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미리 알리면 조사의
목적은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하
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
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7조제1항에 제1호의3 및 제1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놀이구역에서 수상레저 기구를 이용 또는 운용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각 호”를 “각 호(제13호는 제외한다)”로 한다.

1의3.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용료를 초과하여 금전을 받거나 요구한 자

1의4. 제22조제1항제13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금전을 받거나 요구한 자

1.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용료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 하거나 기피한 자

3.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놀이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 또는 운용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탁자 지정 해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유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9조(해수욕장의 관리·운영 등) ① ~ ④ (생략) ⑤ 관리청은 수탁자가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관리·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⑥ (생략) 제21조(사용료의 징수) ①·② (생략) <u><신 설></u>	제19조(해수욕장의 관리·운영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 -----. 1.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관리·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하는 경우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용료를 초과하여 금전을 받거나 요구한 경우 3. 제22조제1항제13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금전을 받거나 요구한 경우 ⑥ (현행과 같음) 제21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해수욕장시설의 관리·운영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2항에

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12. (생략)

<신설>

13. (생략)

②·③ (생략)

<신설>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용료를 해당 영업장소 등 해수욕장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해당 사용료를 초과하여 금전을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① -----

-----.

1. ~ 12. (현행과 같음)

13. 해수욕장시설의 이용, 피사용품의 설치·이용과 관련하여 법령·조례 또는 관리청의 위탁 등에 따른 정당한 권원 없이 금전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14. (현행 제13호와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조사) ① 관리청은 제21조제3항 또는 제22조제1항제13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수욕장 안의 영업장소, 판매·대여시설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일시, 목적 및 대상 등을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미리 알리면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47조(과태료) ①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1의2. (생략)

<신설>

<신설>

2. (생략)

②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놀이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 또는 운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신설>

<신설>

-----.

1. 1의2. (현행과 같음)

1의3.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용료를 초과하여 금전을 받
거나 요구한 자

1의4. 제22조제1항제13호를 위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금
전을 받거나 요구한 자

2.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
용료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
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
놀이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 또는 운용한 자

③ 제22조제1항 <u>각 호</u>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생략)	③ -----<u>각 호</u>(제13호는 <u>제외한다</u>)----- ----- -----. ④ (현행과 같음)
---	---